< 일 러 두 기 >

○ 법령명 : 식품 안전 위생 관리법
○ 제정일 : 1975년 1월 28일
○ 최종개정일 : 2019년 6월 12일
○ 출처 : 대만 식품약물관리서 (방문일 : 2022년 1월 25일)

식품 안전 위생 관리법

1975년 01월 28일 총통령 발표
1983년 11월 11일 총통령 개정 발표
1997년 05월 07일 총통령 개정 발표
2000년 02월 09일 총통령 개정 발표
2002년 01월 30일 총통령 개정 발표
2008년 06월 11일 총통령 개정 발표
2010년 01월 27일 총통령 개정 발표
2011년 06월 22일 총통령 개정 발표
2012년 08월 08일 총통령 개정 발표
2013년 06월 19일 총통령 개정 발표
2014년 02월 05일 총통령 개정 발표
2014년 12월 10일 총통령 개정 발표
2015년 02월 04일 총통령 개정 발표
2015년 12월 16일 총통령 개정 발표
2017년 11월 15일 총통령 개정 발표
2018년 01월 24일 총통령 개정 발표
2019년 04월 03일 총통령 개정 발표
2019년 04월 17일 총통령 개정 발표
2019년 06월 12일 총통령 개정 발표

제1장 총칙

제1조 식품 위생 안전 및 품질 관리, 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본 법을 특별 제정한다.

제2조 본 법에서 말하는 주관 기관이란 중앙에서는 위생 주관 기관이며 직할시에서는 직할시 정부, 현(縣)(시)에서는 현(縣)(시) 정부를 의미한다.

제2-1 전국 식품 안전 사무 협력, 감독, 촉진 및 수사 강화를 위하여 행정원 원장이 소집자로서 관련 부처의 대표, 전문가 및 민간 단체 대표를 소집하여 식품 안전회보를 구성해야 한다. 직무자는 부서의 구분 없이 식품 안전 위험

평가 및 관리 조치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식품 안전 위생 경고 및 감사 제도를 수립하여 3개월마다 1회 이상 회의를 열고 필요시에는 임시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소집자는 정무 위원 혹은 부서 대표를 1명 지정하여 식품 안전회보 집행장으로 임명하고 중앙 주관 기관이 지도한다.
각 직할시, 현(縣)(시), 정부에 식품 안전회보를 설치하고 각 직할시, 현(縣)(시) 정부의 대표가 소집자가 된다. 직무자는 부서의 구분 없이 식품 안전 위생 관리 조치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3개월마다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한다.
제1항 식품 안전회보 결의 사항은 각 관련 부처가 집행하고 행정원이 분기별로 감독하여 대외적으로 공고하며 매년 입법원에 제기한 시정 방침 및 시정 보고에 편입시킨다.
제1항의 식품 안전회보의 구성, 임무, 의사 절차 및 기타 의무 준수 사항은 행정원이 정한다.

제3조 본 법 용어, 정의는 아래와 같다.
1. 식품: 사람에게 먹고 마시거나 혹은 씹을 수 있도록 제공되는 제품 및 그 원료를 말한다.
2. 특수 영양 식품: 유아와 소아 조제 식품, 특정 질병 조제 식품 및 기타 중앙 주관 기관이 특수 영양 수요자에게 공급하도록 허가한 조제 식품을 말한다.
3. 식품 첨가물: 식품 착색, 조미, 부패 방지, 표백, 유화, 풍미 증가, 품질 안정, 발효 촉진, 농도 증가, 영양 강화, 산화 방지 혹은 기타 필요 목적에 따라 식품에 첨가, 접촉시키는 단순 혹은 복합 물질을 말한다. 복합 식품 첨가물에 사용한 첨가물은 중앙 주관 기관이 허가한 식품 첨가물로만 배합하여야 한다. 허가받은 단순 식품 첨가물에는 모두 중앙 주관 기관의 허가번호가 있어야 한다.
4. 식품 도구: 식품 혹은 식품 첨가물과 직접 접촉하는 기계, 공구 혹은 식기를 말한다.
5. 식품 용기 혹은 포장: 식품 혹은 식품 첨가물과 직접 접촉하는 용기 혹은 포장물을 말한다.
6. 식품용 세정제: 식품, 식품 도구, 식품 용기 혹은 포장을 소독 혹은 세척하는 물질을 말한다.

7. 식품 사업자: 식품 혹은 식품 첨가물의 제조, 가공, 조제, 포장, 운송, 저장, 판매, 수입, 수출에 종사하거나 혹은 식품 도구, 식품 용기 혹은 포장, 식품용 세정제의 제조, 가공, 수입, 수출 혹은 판매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8. 표시: 식품, 식품 첨가물, 식품용 세정제, 식품 도구, 식품 용기 혹은 포장에 품명 혹은 설명을 위한 문자, 그림, 기호를 기재하거나 혹은 부가된 설명서를 말한다.
9. 영양 표시: 식품 용기 혹은 포장에 식품의 영양 성분, 함량 및 영양 강조를 기재한 것을 말한다.
10. 검사: 조사 혹은 검사를 말한다.
11. 유전자 변형: 유전자 공정 혹은 분자 생물 기술로 유전 물질을 전이하거나 혹은 살아있는 세포 혹은 생물체를 이식하여 유전자를 재조합하여 외부에서 유입된 유전 특성을 나타내거나 혹은 원래의 특정 유전자를 억제하는 관련 기술을 말한다. 그러나 전통 육종, 동일한 과에 속하는 물종의 세포 및 원형질체 융합, 잡교, 돌연변이 유도, 체외 수정, 체세포 변이 및 염색체 배양 등 기술은 제외한다.
12. 가공 보조제: 식품 혹은 식품 원료의 제조 가공 중, 특정 가공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물질을 말하나 식품 원료 혹은 식품용기구의 물질로는 여겨지지 않는다. 이 물질은 최종품에는 그 기능이 사라지고 식품이 완제품 형식으로 포장되기 전에 이미 제거되지만, 비고의적으로 잔류되거나 혹은 잔류를 피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제2장 식품 안전 위험 관리

제4조 주관 기관은 식품 안전 위생 관리 조치를 통해 위험 평가하고 이를 기초로 건강, 안전한 식품 및 알 권리, 과학적인 증명 원칙, 사전 예방 원칙, 정보 공개 원칙에 대한 대중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위험 평가 및 자문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전항의 위험 평가 시, 중앙 주관 기관이 식품 안전, 독물 및 위험 평가 등 전문가 및 민간 단체로 구성된 식품 위험 평가 자문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구성원 중 단일 성별이 1/3을 초과해야 한다.

제1항 자문 체계는 식품 위생 안전과 영양, 유전자 변형 식품, 식품 광고 표시, 식품 검사 방법 등에 대해 자문회를 조직하고, 식품 안전, 영양학, 의학, 독물학, 위험 관리, 농업, 법률, 인문사회 영역의 전문학자들로 이를 구성해야 한다. 그 구성원 중 단일 성별이 1/3을 초과해야 한다.
자문회 위원의 의사 회피는 행정 절차법 제32조 규정을 적용한다. 자문회 구성, 이사, 절차와 범위 및 기타 의무 준수 사항 수행 방법은 중앙 주관 기관이 정한다.
중앙 주관 기관은 중대 혹은 돌발성 식품 위생 안전 사고에 대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경고 원칙, 위험 평가 혹은 역학 조사 결과에 의거하여 특정 제품 혹은 특정 지역의 제품에 대해 하기 관리 조치를 공고할 수 있다.
1. 수입 검사, 제조 및 가공 방식 혹은 조건의 제한 혹은 정지
2. 판매 금지, 봉인, 기한 내 회수, 기한 내 개조, 몰수 폐기

제5조 각 급 주관 기관은 과학적 증거에 의거하여 식품 위생 안전 모니터링 체계를 수립하여 위해 식품 위생 안전에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사고에 대해 자발적으로 검사하고 조기 경고 혹은 필요 조치를 취해 통제하여야 한다.
전 항의 자발적인 검사, 조기경고 발표 혹은 필요 통제 조치에는 주관 기관의 샘플링 검사, 원료 출처 추적, 제품 흐름, 검사 결과 발표 및 정보 공개와 식품 사업자에 대한 자발적 검사 명령이 포함된다.

제6조 각 급 주관 기관은 통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건을 식품 유발과 감염증 중독으로 분류한 후, 위생복지부 식품 약물 관리서 혹은 위생복지부 질병 관제서에서 주관하고, 식중독 의심 사건에 대한 통보를 수집하고 접수한다.
의료기구에서 환자를 치료할 때, 식중독이 의심되면 24시간 내에 현지 주관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제3장 식품 사업자 위생 관리

제7조 식품 사업자는 자체 관리를 실시하고 식품 안전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하여 식품 위생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식품 사업자는 검사를 위하여 그 제품의 원료, 반제품 혹은 완제품을 기타 검사 기관(기구), 법인 혹은 단체에 제공하거나 혹은 자체 검사해야 한다.
시장 출시, 판매, 기타 중앙 주관 기관이 유형 및 규모를 공고한 식품 사업자는 실험실을 준비하여 전항의 자체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제1항 식품 안전 모니터링을 계획해야 할 사업자의 유형과 규모, 제2항 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할 식품 사업자의 유형 및 규모, 최소 검사 주기 및 기타 관련 사항은 중앙 주관 기관이 공고한다.
식품 사업자가 제품에서 위생 안전 위험 가능성을 발견하면 즉시 자발적으로 제조, 가공, 판매 중지 및 회수 처리하고 직할시 현(縣)(시) 주관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제8조 식품 사업자의 종사자, 작업장, 시설 위생 관리 및 품질 보장 제도는 모두 식품 우수 위생 규범 준칙에 부합하여야 한다.
중앙 주관 기관이 유형 및 규모를 공고한 식품 사업자는 식품 안전 관리 시스템 준칙 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중앙 주관 기관이 유형 및 규모를 공고한 식품 사업자는 중앙 혹은 직할시, 현(縣)(시) 주관 기관에 등록을 신청한 후 영업을 시작해야 한다.
제1항의 식품 우수 위생 규범 준칙, 제2항의 식품 안전 관리 시스템 준칙 및 전항의 식품 사업자 등록 신청의 조건, 절차, 필수 등록 사항 및 변경 신청, 등록 폐지, 취소 및 기타 의무 준수 사항은 중앙 주관 기관이 정한다.
중앙 주관 기관이 유형 및 규모를 공고한 식품 사업자는 위생 안전 관리 시스템 검증을 통과해야 한다.
전항의 검증은 중앙 주관 기관이 인정한 검증 기구가 처리하고 관련신청, 취소와 폐지의 조건 혹은 사유, 검증 집행 수수료, 절차, 방식 및 기타 관련 사항 관리는 중앙 주관 기관이 정한다.

제9조 식품 사업자는 제품 원료, 반제품, 완제품의 출처와 관련된 문건을 보관해야 한다.
중앙 주관 기관이 유형 및 규모를 공고한 식품 사업자는 그 사업 규모에 따라 제품 원료, 반제품, 완제품 공급 출처 및 유통 소급 혹은 추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중앙 주관 기관이 식품 안전 위생 및 품질 관리를 위하여 식품 소급 혹은 추적 시스템 자료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전 항의 사업자에 대한 추적의 필요성에 따라 단계별로 온라인 영수증 사용을 공고해야 한다.
중앙 주관 기관이 제2항의 소급 혹은 추적 시스템을 구축하면 식품 사업자가 온라인 방식으로 소급 혹은 추적 시스템 자료를 보고해야 한다. 그 온라인 보고 방식 및 규격은 중앙 주관 기관이 정한다.
제1항의 보관 문건 종류와 기간 및 제2항의 소급 혹은 추적 시스템의 수립, 의무 기록 사항, 조사 및 기타 의무 준수 사항은 중앙 주관 기관이 정한다.

제10조 식품 사업자의 공장 설립 등기는 공업 주관 기관이 주관 기관과 함께 처리해야 한다.
식품 공장의 건축 및 설비는 공장 설립 표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그 표준은 중앙 주관 기관이 중앙 공업 주관 기관과 함께 정한다.
식품 혹은 식품 첨가물 공장은 단독 설립해야 하며 동일한 부지 및 작업장에서 비식품을 제조, 가공 및 조립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중앙 주관 기관의 조사를 받은 약물 우수 제조 준칙에 부합하는 약품 제조와 식품 제조를 병행하는 사업자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
본 법이 2014년 11월 18일 개정 시행되기 전, 전 항의 공장을 단독 설립하지 않았다면 중앙 주관 기관이 개정 시행 후 6개월 내에 공고하고, 공고 후 1년 이내에 처리를 완료해야 한다.

제11조 중앙 주관 기관이 유형 및 규모를 공고한 식품 사업자는 위생 관리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전 항 위생 관리자의 자격, 교육, 직책 및 기타 의무 준수 사항은 중앙 주관 기관이 정한다.

제12조 중앙 주관 기관이 유형 및 규모를 공고한 식품 사업자는 일정 비율로 전문 직업 혹은 기술 자격증을 보유한 식품, 영양, 요식 등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 식품 위생 안전 관리 사항을 처리해야 한다.
전 항의 전문 직업 혹은 기술 자격증 보유자의 배치, 직책, 업무 집행 및 관리 방법은 중앙 주관 기관이 정한다.

제13조 중앙 주관 기관이 유형 및 규모를 공고한 식품 사업자는 제품 책임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전 항의 제품 책임 보험의 보험 액수 및 약정 내용은 중앙 주관 기관이 정한다.

제14조 공공 요식 장소의 위생 관리 방법은 중앙 주관 기관이 정한 각 유형별 위생 표준 혹은 법령에 따라 직할시, 현(縣)(시) 주관 기관이 정한다.

제4장 식품 위생 관리

제15조 식품 혹은 식품 첨가물이 하기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면 제조, 가공, 조제, 포장, 운송, 저장, 판매, 수입, 수출, 증정 혹은 공개 진열을 금지한다.
1. 변질 혹은 부패한 경우
2. 미숙성하여 건강을 해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3. 유독 혹은 건강에 유해한 물질 혹은 이물질이 함유된 경우
4. 병원성 생물에 감염되거나 혹은 역학 조사 후 식중독 유발 인자가 발견된 경우
5. 잔류 농약 혹은 동물용 의약품 함량이 안전 허용량을 초과한 경우
6. 방사능진 혹은 방사능으로 오염되고 그 함량이 안전 허용량을 초과한 경우
7. 위조 혹은 가짜인 경우
8. 유효 일자가 초과된 경우
9. 대만 국내에 식용으로 공급되지 않았고 인체에 무해함이 증명되지 않은 경우
10. 중앙 주관 기관이 허가하지 않은 첨가물이 첨가된 경우

전 항 제5관(款), 제6관 잔류 농약 혹은 동물용 의약품 안전 허용량 및 방사능진 혹은 방사능 오염 안전 허용량 표준은 중앙 주관 기관이 관련 기관과 함께 정한다.
제1항 제3관에서 언급한 인체 건강에 유해한 물질에는 전염병 발생 구역이 아니지만 최근 10년 내에 소해면상뇌병증 혹은 크로이츠펠트 야콥병과 같은 병례가 발생한 국가 혹은 지역의 소 뼈, 뇌, 눈, 골수, 분쇄육, 내장 및 기타 관련 제품이 포함된다.
대만 국내외 육제품 및 기타 관련 제품에서 중앙 주관 기관이 국민 식습관에 따라 위험 평가를 통해 제정한 안전 허용 표준을 초과한 베타아고니스트가 검출되어서는 안 된다.
대만 국내외에 베타아고니스트가 식용 안전 허용 기준을 초과하여 발생한 중독 사례가 발생하면 즉시 베타아고니스트가 함유된 육제품 수입을 금지한다. 동시에 대만 국내 식용으로 인한 중독 사고를 조사하여 정부가 환자를 치료하고 생산자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하도록 협조한다.

제15조의 1 중앙 주관 기관은 식품에 사용하도록 공급한 원료에 대해 제조, 가공, 조제 방식 혹은 조건, 식용 부위, 사용량, 제조 가능 제품 형태 혹은 기타 사항을 제한하여야 한다.
전 항에서 제한해야 하는 원료 항목 및 그 제한 사항은 중앙 주관 기관이 공고한다.

제16조 식품 도구, 식품 용기 혹은 포장, 식품용 세정제가 하기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면 제조, 판매, 수입, 수출 혹은 사용을 금지한다.
1. 유독한 경우
2. 나쁜 화학 작용이 쉽게 발생하는 경우
3.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경우
4. 기타 위험 평가 후, 위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

제17조 판매된 식품, 식품용 세정제 및 그 도구, 용기 혹은 포장은 위생 안전 및 품질 표준에 부합하여야 하며 그 표준은 중앙 주관 기관이 정한다.

제18조 식품 첨가물의 품명, 규격 및 그 사용 범위, 한도량 표준은 중앙 주관 기관이 정한다.
전 항 표준의 제정은 기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최소량으로 제한해야 하며, 국민의 식습관에 따라 위험 평가하고 동시에 규격 표준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18조의 1 식품 사업자가 식품 혹은 식품 원료 제조를 위해 가공 보조제를 사용할 때, 안전 위생 및 품질 표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그 표준은 중앙 주관 기관이 정한다.
가공 보조제 사용 시, 인체 건강에 위해 가능성이 있으면 안 된다.

제19조 제15조 제2항과 앞의 2조 규정의 표준을 제정하기 전까지, 중앙 주관 기관이 충분한 실험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돌발 사고 긴급 대응책으로 임시 표준을 제정하여야 한다.

제20조 도축장 내 가금 도축 및 분할에 관한 위생 심사는 농업 주관 기관이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규정한다.
운송 중인 도체, 내장 및 그 해체물을 식품 사업자에게 납품한 후, 위생 심사는 위생 주관 기관이 시행한다.
식품 사업자가 소유한 도체, 내장 및 그 해체물의 제조, 가공, 조제, 포장, 운송, 저장, 판매, 수입 혹은 수출에 관한 위생 관리는 각 급 주관 기관이 본 법규정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제2항의 위생 심사 규범은 중앙 주관 기관이 중앙 농업 주관 기관과 함께 정한다.

제21조 중앙 주관 기관이 공고한 식품, 식품 첨가물, 식품 도구, 식품 용기 혹은 포장 및 식품용 세정제는 중앙 주관 기관 검사 등기와 허가증 발급 없이 제조, 가공, 조제, 재포장, 수입 혹은 수출할 수 없다. 그 등기 사항이 변경된 자는 사전에 중앙 주관 기관에 신청하고 심사 승인받아야 한다.

유전자 변형 식품 원료를 함유한 식품은 중앙 주관 기관 건강 위험 평가 심사, 등기, 허가증 발급 없이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중앙 주관 기관이 심사 등기하고 허가증을 발급한 유전자 변형 식품 원료의 수입은 제9조 제5항 규정을 따라야 하며 유전자 변형 식품 원료 공급 출처 및 유통에 관한 소급 혹은 추적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 허가 문건의 유효 기간은 1년~5년이며, 중앙 주관 기관이 심사 결정한다. 기한 만료 후에도 계속 제조, 가공, 조제, 재포장, 수입 혹은 수출해야 할 경우, 기한 만료 전 3개월 이내에 중앙 주관 기관에 연장을 신청한다. 단, 연장 신청 시, 매회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항 및 제2항 허가의 폐지, 허가 문건 발급, 교체 발급, 재발급, 연장, 이전, 말소 및 등기 사항 변경 등 관리 사항은 중앙 주관 기관이 정한다.
제1항 및 제2항 심사 등기는 기타 기구에 처리를 위탁해야 하며, 위탁 방법은 중앙 주관 기관이 정한다.
본 법이 2014년 1월 28일 개정되기 전까지 제2항의 심사 등기가 미완료된 유전자 변형 식품 원료는 공포 후 2년 이내에 처리 완료해야 한다.

제5장 식품 표시 및 광고 관리

제22조 식품 및 식품 원료 용기 혹은 겉포장에 중문 및 범용 부호로 하기 사항을 뚜렷하게 표시해야 한다.
1. 품명
2. 내용물 명칭: 2가지 이상의 혼합물일 경우, 함량의 크기에 따라 위에서 아래로 각각 표시해야 한다.
3. 순중량, 용량 혹은 수량
4. 식품 첨가물 명칭: 2가지 이상 혼합된 식품 첨가물이 기능성으로 명명된 경우, 첨가물 명칭을 각각 기재해야 한다.
5. 제조자 혹은 국내 생산 책임자 명칭, 전화번호 및 주소를 표기하고 국내 농산품 생산 검증 통과자는 추적 가능한 출처를 표시해야 한다. 중앙 농업 주관 기관이 공고한 생산 시스템이 있다면 생산 시스템을 표시해야 한다.
6. 원산지(국가)

7. 유효 일자
8. 영양 표시
9. 함유된 유전자 변형 식품 원료
10. 기타 중앙 주관 기관이 공고한 사항
위 2관 내용물의 주요 성분은 %로 나타내고 표시해야 할 제품, 주요 성분 항목, 표시 내용, 방식 및 해당 제품 실시 일자는 중앙 주관 기관이 별도 지정한다.
제1항 제8관 및 제9관 표시 준수 사항은 중앙 주관 기관이 공고한다.
제1항 제5관 대만 국내 생산 책임자 명칭만 표시할 경우, 제조자, 생산 수탁자 혹은 수입자의 명칭, 전화번호 및 주소를 관할 구역 주관 기관에 통보하고 주관 기관이 기타 주관 기관과 공동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

제23조 용기 혹은 겉포장 면적, 재질 혹은 기타 특수 요인으로 식품에 전조 규정에 따른 표시가 불가능한 경우, 중앙 주관 기관이 일부 표시 면제를 공고하거나 혹은 기타 방식으로 표시해야 한다.

제24조 식품 첨가물 및 기타 원료의 용기 혹은 겉포장에 중문 및 범용 부호로 하기 사항을 뚜렷하게 표시해야 한다.
1. 품명
2. '식품 첨가물'혹은'식품 첨가물 원료'문구
3. 식품 첨가물 명칭: 2가지 이상의 혼합물일 경우, 각각 표시해야 한다. 제18조 제1항에서 규정한 품명 혹은 중앙 주관 기관이 공고한 범용 명칭으로 표시한다.
4. 순중량, 용량 혹은 수량
5. 제조자 혹은 대만 국내 생산 책임자 명칭, 전화번호 및 주소
6. 유효 일자
7. 사용 범위, 용량 표준 및 사용 제한
8. 원산지(국가)
9. 함유된 유전자 변형 식품 첨가물 원료
10. 기타 중앙 주관 기관이 공고한 사항

식품 첨가물 원료는 전 항 제3관, 제7관 및 제9관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전항 제3관 식품 첨가물의 향신료 성분 및 제9관의 표시 준수 사항은 중앙 주관 기관이 공고한다.
제1항 제5관 대만 국내 생산 책임자 명칭만 표시할 경우, 제조자, 생산 수탁자 혹은 수입자의 명칭, 전화번호 및 주소를 관할 구역 주관 기관에 통보하고 주관 기관이 기타 주관 기관과 공동 열람이 가능하도록 이를 공개해야 한다.

제25조 중앙 주관 기관은 음식을 직접 공급하는 장소에 공급하는 특정 식품 원산지 및 기타 의무 표시 사항의 중문 표시를 요구해야 한다. 특정 벌크 식품 판매자에게는 판매 지점과 방식을 제한하거나 혹은 품명, 원산지(국가), 함유된 유전자 변형 식품 원료, 제조 일자 혹은 유효 일자 및 기타 의무 표시 사항의 중문 표시를 요구해야 한다. 대만 국내 농산품 생산 검증을 통과한 경우, 추적 가능한 출처를 표시해야 한다. 중앙 농업 주관 기관이 공고한 생산 시스템이 있으면 생산 시스템을 표시해야 한다.
전 항의 특정 식품 항목, 의무 표시 사항, 방법 및 범위와 특정 벌크 식품 항목, 제한 방식 및 의무 표시 사항은 중앙 주관 기관이 공고한다.
제1항 추적 가능한 출처 혹은 생산 시스템 표시 규정은 2015년 1월 20일 개정 공포 6개월 후 시행한다.

제26조 중앙 주관 기관이 공고한 식품 도구, 식품 용기 혹은 포장에 중문 및 범용 부호로 하기 사항을 뚜렷하게 표시해야 한다.
1. 품명
2. 재질 명칭 및 내열 온도: 2가지 이상의 재질인 경우, 각각 기재해야 한다.
3. 순중량, 용량 혹은 수량
4. 대만 국내 생산 책임자 명칭, 전화번호 및 주소
5. 원산지(국가)
6. 제조 일자: 유효성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유효 일자 혹은 유효 기간을 표기해야 한다.
7. 사용 주의사항 혹은 전자레인지 등 기타 경고문
8. 기타 중앙 주관 기관이 공고한 사항

제27조 식품용 세정제의 용기 혹은 겉포장에 중문 및 범용 부호로 하기 사항을 뚜렷하게 표시해야 한다.

1. 품명
2. 주요 성분 화학 명칭: 2가지 이상 성분인 경우 각각 기재해야 한다.
3. 순중량 혹은 용량
4. 대만 국내 생산 책임자 명칭, 전화번호 및 주소
5. 원산지(국가)
6. 제조 일자: 유효성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유효 일자 혹은 유효 기간을 표기해야 한다.
7. 적용 대상 혹은 용도
8. 사용 방법 및 사용 주의사항 혹은 경고문
9. 기타 중앙 주관 기관이 공고한 사항

제28조 식품, 식품 첨가물, 식품용 세정제 및 중앙 주관 기관이 공고한 식품 도구, 식품 용기 혹은 포장의 표시, 홍보 혹은 광고 내용은 허위, 과장 혹은 오해를 유도해서는 안 된다.

식품은 의료 효과를 표시, 홍보 혹은 광고할 수 없다.

중앙 주관 기관이 특수 영양 식품, 만성 질환 유발 가능성 혹은 어린이 및 특수 수요자의 장기 섭취 부적합 식품에 대해 판촉 혹은 광고를 제한하여야 한다. 그 식품의 항목, 판촉 혹은 광고 제한과 방송 및 기타 의무 준수 사항은 중앙 주관 기관이 정한다.

제1항 허위, 과장 혹은 오해 유도 및 의료 효과 인정 기준, 홍보 혹은 광고의 내용, 방식 및 기타 의무 준수 사항 준칙은 중앙 주관 기관이 정한다.

제29조 방송을 위탁받은 광고 사업자는 공고일로부터 6개월 동안 위탁자의 성명 혹은 명칭, 신분증 번호, 기업, 상호, 법인 혹은 단체 설립 등기 문건 번호, 거주지 혹은 사무소, 영업 장소 및 전화번호 등 자료를 보관하고 주관 기관이 제출을 요청하면 이를 회피, 방해 혹은 거절하면 안 된다.

제6장 식품 수입 관리

제30조 중앙 주관 기관이 공고한 식품, 유전자 변형 식품 원료, 식품 첨가물, 식품 도구, 식품 용기 혹은 포장 및 식품용 세정제를 수입할 때, 세관 전용 화물 분류 번호에 따라 중앙 주관 기관에 검사 신청하고 그 제품 관련 정보를 신고해야 한다.
전 항의 규정 집행 시, 실적 우수 사업자의 경우, 중앙 주관 기관이 특혜를 제공해야 한다.
제1항 수입 제품이 비판매품이며 금액, 수량이 중앙 주관 기관의 공고에 부합하거나 혹은 중앙 주관 기관 전문 승인을 받은 제품이면 검사 신청을 면제한다.

제31조 전조 제품 수입의 검사 및 신고는 중앙 주관 기관이 관련 기관(기구), 법인 혹은 단체에 위임, 위탁한다.

제32조 주관 기관은 식품 위생 안전사고 조사와 예방을 위하여 필요 시, 식품 사업자, 비식품 사업자 혹은 그 대리인에게 수입 제품 관련 기록, 문건 및 온라인 파일 혹은 데이터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식품 사업자, 비식품 사업자 혹은 그 대리인은 제공을 회피, 방해 혹은 거부할 수 없다.
식품 사업자는 전 항의 수입 제품, 유전자 변형 식품 원료 관련 기록, 문건 및 온라인 파일 혹은 데이터를 5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전 항에서 보관해야 하는 자료, 방식 및 범위는 중앙 주관 기관이 정한다.

제33조 특수한 성질이나 검사 시간 등 특수 조건이 있는 수입 제품은 식품 사업자가 검사 기관에 선행 발급을 신청하고 특정 지점에 보관해야 한다. 검사 인증에 보증금이 필요한 경우, 검사 기관이 보증금 납부를 명령하고 선행 발급을 허가한다.
전 항에 선행 발급 제품의 보관 지점은 식품 사업자 혹은 그 대리인이 지정해야 한다. 수입 허가를 받기 전에는 제품을 이동, 사용 혹은 판매할 수 없다.

제30조, 제31조 및 본 조 제1항 제품 수입 검사, 신고 검사, 신고의 위탁, 우수 생산업자 수입 검사 및 신고 특혜 조치, 수입 제품 선행 발급 조건, 보증금 납부 대상 심사 기준, 보증금 수취 표준 및 기타 의무 준수 사항은 중앙 주관 기관이 정한다.

제34조 중앙 주관 기관은 중대 식품 위생 안전 사고 발생 혹은 수입 제품 검사 불합격 상황이 심각하면, 관련 사업자, 생산지 혹은 제품에 관하여 검사 신청을 중지한다.

제35조 중앙 주관 기관은 안전 위험 통제 난이도가 높은 식품에 대하여 수입 전 체계적인 조사 확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전 항의 체계적인 조사 확인을 실시할 제품의 범위, 절차 및 기타 관련 사항은 중앙 주관 기관이 정한다.
중앙 주관 기관은 원천 관리의 필요성 혹은 개별 식품 위생 안전 사고에 기인하여 해당 수입 식품의 위생 안전 관리 등 조사를 위하여 해외에 조사원을 파견해야 한다.
식품 사업자가 식품 첨가물을 수입할 때, 두 가지 이상의 성분을 함유한 제품에 속하면, 원산국의 제조업자 혹은 생산 책임자가 발급한 제품 성분 보고 및 수출국의 공식 위생 증명을 첨부하여 각 급 주관 기관에 조사 자료로 제출한다. 그러나 향신료는 제외한다.

제36조 해외 식품, 식품 첨가물, 식품 도구, 식품 용기 혹은 포장, 식품용 세정제가 신체 혹은 건강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으면, 중앙 주관 기관이 공고한다. 관광객이 휴대하여 입국할 시에는 생산국 위생 주관 기관이 발급한 위생 증명 문건을 첨부하여 신고한다. 국민의 신체 혹은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게 되면, 중앙 주관 기관이 관광객 휴대 입국 금지를 공고해야 한다.
전 항의 규정을 위반하면 소유자를 막론하고 모두 몰수 폐기한다.

제7장 식품 검사

제37조 식품, 식품 첨가물, 식품 도구, 식품 용기 혹은 포장, 식품용 세정제의 검사는 각 급 주관 기관이 시행하거나 혹은 인가받은 관련 기관(기구), 법인 혹은 단체에 위임, 위탁한다.
중앙 주관 기관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위임, 위탁받은 관련 기구(기구), 법인 혹은 단체에 대해 인증해야 한다. 필요 시, 인증 작업을 관련 기관(기구), 법인 혹은 단체에 위임, 위탁해야 한다.
상기 2항의 관련 검사의 위탁, 검사 기관(기구), 법인 혹은 단체의 인증 조건과 절차, 위탁 처리 인증 작업의 절차 및 기타 관련 사항의 관리는 중앙 주관 기관이 정한다.

제38조 각 급 주관 기관이 식품, 식품 첨가물, 식품 도구, 식품 용기 혹은 포장, 식품용 세정제를 검사할 때의 방법은 식품 검사 방법 자문회의 자문을 거쳐 중앙 주관 기관이 정하고 검사 방법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국제적으로 승인된 방법을 따라야 한다.

제39조 식품 사업자가 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원래의 샘플링 검사 기관(기구)에 재검사를 신청한다. 신청을 받은 기관(기구)는 3일 이내에 재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검체가 검사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신청 접수를 거부한다.

제40조 식품 위생 검사 정보 발표 시, 검사 방법, 검사 단위 및 결과 판단 근거를 동시 발표해야 한다.

제8장 식품 조사 및 통제

제41조 직할시, 현(縣)(시)은 식품, 식품 첨가물, 식품 도구, 식품 용기 혹은 포장, 식품용 세정제가 본 규정에 부합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하기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이를 회피, 방해 혹은 거부하지 않고 협력하여야 한다.

1. 제조, 가공, 조제, 포장, 운송, 저장, 판매 장소에 대한 현장 조사 및 샘플링 검사를 실시한다.
2. 전 관(款)의 조사 혹은 샘플링 검사 시, 전호 장소의 식품 사업자에게 원료 혹은 제품 출처 및 수량, 작업, 품질 보장, 판매 대상, 금액, 기타 증빙 자료, 증명 혹은 기록 제공을 요구하고 검열, 억류 혹은 복제해야 한다.
3. 조사 혹은 검사 결과, 본 법규 규정에 부합하지 않은 식품, 식품 첨가물, 식품 도구, 식품 용기 혹은 포장, 식품용 세정제는 봉인해야 한다.
4. 제8조 제1항, 제15조 제1항, 제4항, 제16조, 중앙 주관 기관이 제17조, 제18조 혹은 제19조에 의거하여 규정한 표준을 위반할 경우, 식품 사업자에 대해 작업 일시 정지 및 판매 정지를 명령하고 해당 제품을 봉인한다.
5. 식중독 의심 사건을 보고 받으면, 해당 식품 사업자에 대해 기한 내 개선을 명령하거나 혹은 관련 식품 종사자를 각 급 주관 기관이 인가한 기관(기구)에 파견하여 식중독 방지 위생 교육을 4시간 이상 수료하도록 명령하고 조사 기간 동안 작업 일시 정지, 판매 정지 및 소독 시행을 명령하며 해당 제품을 봉인해야 한다.
중앙 주관 기관은 필요 시 위 규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42조 전조의 조사, 검사와 통제 조치 및 기타 의무 준수 사항은 중앙 주관 기관이 정한다.

제42조의 1 식품 안전 위생 보호와 생산자의 불법 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하여 경찰 기관이 주관 기관에 인력을 파견하여 협력하도록 한다.

제43조 주관 기관이 식품, 식품 첨가물, 식품 도구, 식품 용기 혹은 포장, 식품용 세정제, 표시, 홍보, 광고 혹은 식품 사업자가 본 법을 위반하였음을 제보 받으면 제보자 신분 정보에 대한 보안을 엄격히 유지하고 포상해야 한다. 만약 공무원이 비밀을 누설하면 법에 의거하여 형사 및 행정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전항의 제보 처리 관할, 처리 기간, 기밀, 제보자 포상 및 기타 의무 준수 사항은 중앙 주관 기관이 정한다.
제1항 제보자 신분 정보에 대한 보안은 소송 절차와 동일하다.

제9장 벌칙

제44조 하기 행위 중 하나를 저지르면 6만 위안(TWD) 이상 ~ 2억 위안(TWD)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황이 엄중하면 휴업 명령, 시한 영업 정지 명령, 그 기업, 영업, 공장 등기의 전부 혹은 일부를 폐지하거나 식품 사업자 등록을 폐지한다. 등록 폐지의 경우 1년 이내에 재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1. 제8조 제1항 혹은 제2항 규정을 위반하여 기한 내 시정을 명령하였으나 기한 만료까지 시정하지 않은 경우
2. 제15조 제1항, 제4항 혹은 제16조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주관 기관이 제52조 제2항 규정에 의거하여 회수, 폐기를 명령하였으나 시행하지 않은 경우
4. 중앙 주관 기관이 제54조 제1항에 의거하여 제조, 판매, 수입 혹은 수출 금지를 공고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전항의 벌금의 판결 기준은 중앙 주관 기관이 정한다.

제45조 제28조 제1항 혹은 중앙 주관 기관이 제28조 제3항에 의거하여 정한 방법을 위반하면 4만 위안(TWD) 이상 400만 위안(TWD)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조 제2항 규정을 위반하면 60만 위안(TWD) 이상 500만 위안(TWD)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재위반하면 휴업 명령, 시한 영업 정지 명령, 그 기업, 영업, 공장 등기의 전부 혹은 일부를 폐지하거나 식품 사업자 등록을 폐지한다. 등록 폐지의 경우 1년 이내에 재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전 항의 광고 규정을 위반한 식품 사업자는 방송을 중지할 때까지 횟수별 처벌한다.

제28조 광고 관련 규정 중 하나를 위반하고 상황이 엄중하면 전2항 규정에 따른 처벌 외에도 주관 기관이 판매, 공급 혹은 진열 금지를 명령해야 한다. 그리고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원래의 방송과 동일한 지면, 시간대에 시정 광고를 일정 횟수 방송해야 한다. 그 내용은 사과 및 오류 제거 정보를 기재해야 한다.

전항 규정을 위반하고 계속 판매, 공급, 진열하거나 혹은 시정 광고를 방송하지 않으면 12만 위안(TWD) 이상 60만 위안(TWD)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6조 광고자가 제29조 규정을 위반하면 6만 위안(TWD) 이상 30만 위안(TWD)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횟수별 처벌한다.
직할시, 현(縣)(시) 주관 기관은 전조 제1항 처벌 시, 광고자 및 그 직할시, 현(縣)(시) 주관 기관 혹은 목적 사업 주관 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광고자는 통지를 받은 다음 날로부터 즉시 방송을 중지하여야 한다.
광고자가 전 항 규정에 의거하여 방송 중지를 하지 않거나 제28조 제1항 혹은 제2항 규정을 위반하거나 혹은 중앙 주관 기관이 제28조 제3항에 의거하여 규정한 광고 제한 혹은 지정 방법 중 광고 중지 규정을 위반한 자는 12만 위안(TWD) 이상 60만 위안(TWD)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방송을 중지할 때까지 횟수별 처벌한다.
광고자가 제2항 규정에 의거하여 통지를 받은 후에도 방송을 중지하지 않으면 직할시, 현(縣)(시) 주관 기관이 전 항 규정에 의거하여 처벌하고 또한 광고자의 직할시, 현(縣)(시) 주관 기관 혹은 그 목적 사업 주관 기관에 통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46조의 1 식품 안전 유언비어 혹은 허위 정보를 퍼뜨려 대중 혹은 타인의 손해를 유발하면 3년 이하의 유기 징역, 구류 혹은 100만 위안(TWD)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7조 하기 행위 중 하나를 저지르면 3만 위안(TWD) 이상 300만 위안(TWD)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황이 엄중하면 휴업 명령, 시한 영업 정지 명령, 그 기업, 영업, 공장 등기의 전부 혹은 일부를 폐지하거나 식품 사업자 등록을 폐지한다. 등록 폐지의 경우 1년 이내에 재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1. 중앙 주관 기관이 제4조에 의거하여 공고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제7조 제5항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식품 사업자가 제8조 제3항, 제9조 제2항 혹은 제4항 규정에 따라 등록, 수립 혹은 신고한 자료가 사실과 다른 경우 혹은 제9조 제3항에 의거하여 허위 온라인 영수증을 발급하여 식품의 소급 혹은 추적 조사에 영향을 미친 경우
4. 제11조 제1항 혹은 제12조 제1항 규정을 위반한 경우

5. 중앙 주관 기관이 제13조에 의거하여 규정한 제품 책임 보험 가입 규정을 위반한 경우
6. 직할시 혹은 현(縣)(시) 주관 기관이 제14조에 의거하여 규정한 관리 방법 중 공공 요식 장소 안전 위생 규정을 위반한 경우
7. 중앙 주관 기관이 제18조의 1 제1항에 의거하여 규정한 표준 규정을 위반하여 기한 내 시정을 명령하였는데도 기한 내 시정하지 않은 경우
8. 제21조 제1항 및 제2항, 제22조 제1항 혹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고 사항, 제24조 제1항 혹은 제2항에 의거한 공고 사항, 제26조 혹은 제27조 규정을 위반한 경우
9. 제48조 제9관 규정 외에도 중앙 주관 기관이 제18조에서 규정한 표준 중 식품 첨가물 규격 및 그 사용 범위, 한도량과 관련된 규정을 위반한 경우
10. 중앙 주관 기관이 제25조 제2항에 의거하여 공고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11. 본 법에서 규정한 조사, 검사, 압류 혹은 봉인을 회피, 방해 혹은 거부한 경우
12. 본 법 규정에 의거하여 제공하여야 할 자료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혹은 허위 자료를 제공한 경우
13. 본 법 규정에 의거하여 작업 중지 혹은 판매 중지를 명령받았으나 시행하지 않은 경우
14. 제30조 제1항 규정을 위반하고 수입 제품 정보 신고를 하지 않거나 혹은 허위 정보를 신고한 경우
15. 제53조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48조 하기 행위 중 하나에 해당하면 기한 내 시정을 명령하고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으면 3만 위안(TWD) 이상 300만 위안(TWD)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상황이 엄중하면 휴업 명령, 시한 영업 정지 명령, 그 기업, 영업, 공장 등기의 전부 혹은 일부를 폐지하거나 식품 사업자 등록을 폐지한다. 등록 폐지의 경우 1년 이내에 재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1. 제7조 제1항 규정을 위반하고 식품 안전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제2항 혹은 제3항 규정에 따라 실험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2. 제8조 제3항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하지 않거나 혹은 제8조 제5항 규정을 위반하고 검증을 받지 않은 경우
3. 제9조 제1항 규정을 위반하여 문건을 보관하지 않거나 혹은 보관 기한이 규정 기한에 미달된 경우
4. 제9조 제2항 규정을 위반하여 소급 혹은 추적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은 경우
5. 제9조 제3항 규정을 위반하여 온라인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 식품 소급 혹은 추적을 불가능하게 만든 경우
6. 제9조 제4항 규정을 위반하여 온라인 방식으로 신고하지 않거나 혹은 중앙 주관 기관이 정한 방식 및 규격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7. 제10조 제3항 규정을 위반한 경우
8. 중앙 주관 기관이 제17조 혹은 제19조에 의거하여 정한 표준 규정을 위반한 경우
9. 식품 사업자가 판매한 제품이 중앙 주관 기관이 제18조에 의거하여 규정한 식품 첨가물 규격 및 그 사용 범위, 한도량 규정에 위배된 경우
10. 제22조 제4항 혹은 제24조 제3항 규정을 위반하고 관할 구역 주관 기관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
11. 제35조 제4항 규정을 위반하고 제품 성분 보고 및 수출국의 공식 위생 증명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12. 중앙 주관 기관이 제15조의 1 제2항에 의거하여 공고한 제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48조의 1 하기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면 중앙 주관 기관이 3만 위안(TWD) 이상 300만 위안(TWD)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상황이 엄중하면 그 위탁 혹은 인증을 일시 정지, 중지 혹은 폐지한다. 위탁 중지 혹은 인증 폐지의 경우 1년 이내에 수탁 혹은 인증 재신청이 금지된다.
1. 본 법에 의거하여 식품 사업자 위생 안전 관리 검증 위탁을 받고 제8조 제6항에 따라 규정된 관리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본 법에 의거하여 인증을 받은 검사 기구, 법인 혹은 단체가 제37조 제3항에 의거하여 규정한 인증 관리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본 법에 의거하여 위탁을 받은 검사 기관(기구), 법인 혹은 단체가 제37조 제3항에 따라 규정한 위탁 인증 관리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49조 제15조 제1항 제3관, 제7관, 제10관 혹은 제16조 제1관 행위에 해당하면 7년 이하의 유기 징역에 처하며 8000만 위안(TWD)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상황이 경미하면 5년 이하 유기 징역, 구류 혹은 800만 위안(TWD)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제44조부터 전조까지의 행위를 저지르면 인체 건강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심각한 상황의 경우, 7년 이하의 유기 징역, 8000만 위안(TWD)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고 인체 건강에 피해를 유발한 경우에는 1년 이상 7년 이하 유기 징역과 1억 위안(TWD)의 벌금을 병과한다.
전 항의 범죄로 사망자가 발생하면 무기 징역 혹은 7년 이하의 유기 징역과 함께 2억 위안(TWD)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중상자가 발생하면 3년 이상 10년 이하 유기 징역과 1억 5천만 위안(TWD)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과실로 제1항, 제2항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2년 이하 유기 징역, 구류 혹은 600만 위안(TWD)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법인 대표, 법인 혹은 자연인 대표, 고용인 혹은 기타 종사자가 업무 집행으로 제1항~제3항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행위 당사자를 처벌하고 또한 해당 법인 혹은 자연인에게도 각 해당 항목의 10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벌금 부과 시, 형법 제58조 규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49조의 1 본 법의 범죄를 저지르고 그 범죄로 인한 소득과 추징 범위 및 금액을 판정하기 곤란할 경우, 추산해야 한다. 추산 방법은 행정원이 정한다.

제49조의 2 중앙 주관 기관이 유형 및 규모를 공고한 식품 사업자가 제15조 제1항, 제4항 혹은 제16조 규정을 위반하거나 혹은 제44조~제48조의 1의 행위로 인하여 인체 건강에 위해를 가하면 소득 재산 혹은 기타 이익을 몰수 혹은 추납해야 한다.
정당한 이유로 처분을 받은 자가 전항 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그 재물 혹은 재산상 이익을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제3자가 양도받은 재물 혹은 재산상 이익을 주관 기관이 몰수 혹은 추납해야 한다. 만약 전부 혹은 일부를 몰수할 수 없다면 그 금액을 추징하거나 혹은 그 재산으로 변상해야 한다.

전 2항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 몰수 혹은 추납, 그 금액에 상당하는 추징 혹은 재산 변상을 위하여 주관 기관이 법에 의거하여 담보 제공 없이 압류하거나 혹은 행정 법원에 가압류 혹은 가처분을 청원한다.
주관 기관이 본 조항에 의거하여 몰수 혹은 추납할 불법 소득, 재산상 이익, 추징금 혹은 배상 재산을 추산하는 방법은 행정원이 정한다.

제50조 주관 기관 혹은 사법 기관에 본 법 위반 행위를 제보하거나 소송의 증인이 되거나 혹은 본 법 위반 행위 참여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주가 고용인에게 해고, 이동 혹은 기타 불이익 처분을 줄 수 없다.
고용주 혹은 고용주를 대표하여 관리권을 행사하는 자가 전 항의 규정에서 정한 해고, 좌천 혹은 급여 삭감을 결정하여도 무효이다.
고용주 외 다른 사람이 본 법 규정 위반에 참여하고 형사 책임을 져야 할 행위를 저질렀으나 주관 기관 혹은 사법 기관에 이를 폭로하면 형벌을 경감 혹은 면제한다.

제51조 하기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면 주관 기관이 아래와 같이 처분한다.
1. 식품 사업자 혹은 그 대리인이 제47조 제14관 규정에 해당하면, 제30조 제1항 규정에 의거한 검사 신청을 일시 정지해야 한다. 제품을 이미 거래하였다면 불법으로 간주하고 식품 사업자에게 회수, 폐기 혹은 반송 처리를 명령한다.
2. 제30조 제3항 규정을 위반하고 수입 검사가 면제된 제품을 판매하면 검사 면제 신청을 1년 중지한다.
3. 제33조 제2항 규정을 위반하고 수입 허가를 취득하기 전, 제품을 이동, 사용 혹은 판매하거나 혹은 보고된 보관 장소와 실제 보관 장소가 상이할 경우, 보증금을 몰수하고 식품 사업자의 보관 신청을 1년 동안 중지한다. 임의 판매할 경우, 판매 금액의 1배~20배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52조 제41조 규정에 의거하여 식품, 식품 첨가물, 식품 도구, 식품 용기 혹은 포장, 식품용 세정제를 조사 혹은 검사할 때 현지 직할시, 현(縣)(시) 주관 기관이 조사 혹은 검사 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분한다.

1. 제15조 제1항, 제4항 혹은 제16조에서 나열한 관(款) 중 하나에 해당하면 몰수 폐기해야 한다.
2. 중앙 주관 기관이 제17조, 제18조에 의거하여 규정한 표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혹은 제21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을 위반하면 그 제품 및 이를 원료로 제조한 제품을 몰수 폐기해야 한다. 그러나 소독 혹은 적절한 안전 조치를 취한 후 식용, 사용 가능하거나 혹은 건강에 해롭지 않으면 기한 내에 소독, 개조 혹은 적절한 안전 조치를 시행하도록 통지한다. 기한 내에 시행하지 않으면 몰수 폐기한다.
3. 제22조 제1항 혹은 제2항 및 제3항에 의거한 공고 사항, 제24조 제1항 혹은 제2항에 의거한 공고 사항, 제26조, 제27조 혹은 제28조 제1항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한 자에게 기한 내 회수 시정을 통지하고 시정 전까지는 판매할 수 없도록 한다. 기한 내에 제28조 제2항 규정을 시행하지 않으면 몰수 폐기한다.
4. 제41조 제1항 규정에 의거하여 작업 일시 중지 및 판매 중지와 봉인을 명령한 제품이 전 3관에 해당되지 않으면 원래의 처분을 취소하고 봉인을 해제한다.
전 항 제1관~제3관의 몰수에 해당하는 경우, 먼저 제조, 판매를 명령하거나 혹은 수입자에게 사용 혹은 식용을 즉시 중지하도록 명령하고 회수, 폐기해야 한다. 필요 시, 현지 직할시, 현(縣)(시) 주관 기관이 대신 회수, 폐기하고 소요 비용을 수취하여야 한다.
전 항의 회수, 폐기 대상 제품의 회수, 폐기 방법은 중앙 주관 기관이 정한다.
제1항 제1관 혹은 제2관 제품을 제조, 가공, 조제, 포장, 운송, 판매, 수입, 수출한 식품 사업자는 현지 직할시, 현(縣)(시) 주관 기관이 그 상호, 주소, 책임자 성명, 상품명 및 불법 상황을 공개한다.
제1항 제품 수입 시 세관 검사 후 규정에 부합하지 않으면 중앙 주관 기관이 그 수입을 통제하고 제1항 각 관, 제2항 및 전 항의 처분을 결정한다.

제53조 직할시, 현(縣)(시) 주관 기관이 제1항 규정에 의거하여 기한 내에 제품 회수 폐기를 명령하거나 혹은 기타 필요 처리를 명령한 후 식품 사업자가 규정된 기한 내에 처리 과정, 결과 및 개선 상황 등을 자료를 직할시, 현(縣)(시) 주관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4조 식품, 식품 첨가물, 식품 도구, 식품 용기 혹은 포장, 식품용 세정제가 제52조 제1항 제1관 혹은 제2관 상황에 해당하면 제52조 규정에 의거하여 처리하고 중앙 주관 기관이 그 제조, 판매, 수입 혹은 수출 금지를 공고해야 한다.
만약 전 항의 금지가 공고된 제품이 중앙 주관 기관이 검사 등기하고 허가증을 발급한 제품이었다면 그 허가도 폐지된다.

제55조 본 법에서 규정한 처벌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직할시, 현(縣)(시) 주관 기관이 시행하며 필요 시 중앙 주관 기관이 시행한다. 그러나 기업, 영업 혹은 공장 등기 사항의 전부 혹은 일부의 폐지는 직할시, 현(縣)(시) 주관 기관이 휴업 강제 명령 처분 확정 후 공·상업 주관 기관 혹은 그 목적 사업 주관 기관에 시행을 이관한다.

제55조의 1 본 법에 의거한 행정 처벌의 행위 액수 인정 기준은 중앙 주관 기관이 기준을 정한다.

제56조 식품 사업자가 제 15조 제1항 제3관, 제7관, 제10관 혹은 제16조 제1관 규정을 위반하여 소비자 손해를 유발하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식품 사업자가 손해의 원인이 그 제조, 가공, 조제, 포장, 운송, 저장, 판매, 수입, 수출이 아님을 증명하거나 혹은 손해 발생 방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한 경우는 제외한다.
소비자가 재산상 손해는 없지만 손해에 상당한 금액 배상을 요구하면 소비자 보호법 제47조~제55조 규정을 적용하여 소송을 제기한다.
소비자가 실질적인 손해액을 증명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할 경우 침해 상황에 따라 법원에 청원하고 1인 1사건당 500위안(TWD) 이상 30만 위안(TWD) 이하로 계산한다.
직할시, 현(縣)(시) 정부가 동일한 원인의 사건을 접수 받고 소비자 20인 이상의 손해 제소를 받으면 소비자 보호법 제50조 규정에 의거하여 처리해야 한다.

소비자 보호 단체의 위임으로 소비자 보호법 제49조 제1항 소송을 담당하는 변호사가 소송 관련 보수를 청구할 때 소비자 보호법 제49조 제2항 후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56조의 1 중앙 주관 기관이 식품 안전 사건에 관한 소비자 권리 보장을 위하여 식품 안전 보호 기금을 설립하고 기타 기관(기구), 법인 혹은 단체에 위탁하여야 한다.
전 항의 기금 출처는 아래와 같다.
1. 본 법 위반 벌금의 일부 할당
2. 본 법에 의거하여 병과한 벌금 및 본 법 규정을 위반하여 몰수 혹은 추징한 현금 혹은 환금 소득
3. 본 법 혹은 행정 처벌 규정에 의거하여 몰수, 추납, 추징 혹은 배상한 부정당한 이익의 일부 할당
4. 기금 수익
5. 기부 소득
6. 예산 절차에 따른 지출
7. 기타 관련 수입
전 항 제1관 및 제3관 출처는 2013년 6월 21일 이후 처분된 안건에 적용한다.
제1항 기금의 용도는 아래와 같다.
1. 소비자 보호 단체가 소비자 보호법에 의거하여 식품 위생 안전 사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때의 변호사 보수 및 소송 관련 비용을 보조한다.
2. 공고한 특정 식품 위생 안전 사건이 인체 건강에 미친 위험을 평가할 때 그 비용을 보조한다.
3. 고용주의 본 법 위반 행위를 제보한 노동자가 해고, 이동 혹은 기타 불이익 처분을 받은 후 복귀, 급여 수령 및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때 변호사 비용 및 소송 관련 비용을 보조한다.
4. 제43조 제2항에서 규정한 포상금을 보조한다.
5. 기타 식품 안전 촉진 관련 비용을 보조한다.
중앙 주관 기관은 전문가, 소비자 보호 단체, 사회 공정 인사로 기금 운용 관리 감독팀을 구성하고 업무를 감독 보조한다.

제4항 기금의 보조 대상, 신청 자격, 심사 절차, 보조 기준, 보조 폐지, 전 항의 기금 운용 관리 감독팀의 구성, 운영 및 기타 의무 준수 사항은 중앙 주관 기관이 정한다.

제10장 부칙

제57조 본 법의 식품 도구 혹은 용기 관련 규정을 어린이가 입에 자주 넣게 되는 완구에 적용한다.

제58조 중앙 주관 기관이 본 법에 의거하여 식품 사업자로부터 심사, 검사 및 허가증 발급 신청을 받을 때, 심사비, 검사비 및 증서 발급비를 수취하여야 한다. 그 액수는 중앙 주관 기관이 정한다.

제59조 본 법 시행 세칙은 중앙 주관 기관이 정한다.

제60조 본 법 30조 신고 제도와 제33조 보증금 수취 규정 및 제22조 제1항 제5관, 제26조, 제 27조는 공포 1년 후 시행하고 그 외 나머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2조 제1항 제4호는 2014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본 법 규정 중 2014년 1월 28일 개정된 제21조 제3항은 공포 1년 후 시행한다.
본 법 2014년 11월 18일 개정조문 중 제22조 제1항 제5관 공급원 혹은 생산 시스템을 추적 가능하도록 표시해야 하는 규정은 공포 6개월 후 시행하고 제7조 제3항 식품 사업자의 실험실 의무 설치 규정, 제22조 제4항, 제24조 제1항 식품 첨가물 원료 의무 표시 사항 규정, 제24조 제3항 및 제35조 제4항 규정은 공포 1년 후 시행하며 그 외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